

#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

(사 회 도 시 위 원 회)

## 1. 감사일시 : 2001년 12월 3일(월) <제5일차>

- 감사개시 : 10시33분
- 감사종료 : 15시45분

## 2. 출 석

- 위 원 : 김주석 위원장의 위원 6명 ▷ 허명도위원 불참
- 관계공무원 : 도시국장  
 건설과장 (건설행정, 토목, 보상, 방재, 기전담당)  
 도시개발과장 (개발기획, 도시정비, 도시개발, 하수관리담당)

## 3. 감사실시주요내용

내 용	시 간	비 고
○ <b>건설과 행정사무감사</b>	<b>10:33~14:22</b>	
· 선서 및 감사자료 현황보고	10:33~10:35	건 설 과 장
· 질의답변	10:35~11:35	
· 감사중지	11:35	
· 질의답변	11:45~12:25	
· 감사중지	12:25	중 식
· 질의답변	14:00~14:22	
· 감사중지	14:22	
○ <b>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</b>	<b>14:42~15:45</b>	
· 선서 및 감사자료 현황보고	14:42~14:45	도 시 개 발 과 장
· 질의답변	14:45~15:15	
· 감사중지	15:15	
· 질의답변	15:40~15:45	
○ <b>감사종료</b>	<b>15:45</b>	

##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쟁점사항 (사회도시위원회)

일시	소관부서	주요쟁점사항
2001.12.3(월) 10:33~14:22	건설과	<p>○ 관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행위 단속이 일과성에 그치고 있어 지도단속·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점포상인의 피해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노점상 및 도로점용행위지역에 대하여는 확고한 정비의지를 갖고 구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. (이해수, 김상수, 이정도위원)</p> <p>○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하단2동 강촌가든 입구 주위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다고 하나 정비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여전히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으로 조속한 정비와 추후 지속적인 순찰·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(장용희 위원)</p> <p>○ 다대2동 1553번지 소재 혼우철강 진입도로상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옹벽균열에 따른 주민진정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한 바, 옹벽의 안전도에 대한 정밀진단등 민원해소에 적극적인 노력바람. (김명석, 김주석 위원)</p> <p>○ 행정소송 패소로 2000년 5월 배상금을 지급한 하단동 을숙도입구 굴다리위 전기감전사고의 경우, 예방이 가능함에도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인 바, 추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·재난우려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(강정순, 김명석, 김상수 위원)</p>

일 시	소관부서	주 요 쟁 점 사 항
2001.12.3(월) 10:33~14:22	건 설 과	<p>○ 하단동 세양병원 앞 자전거보관대 주변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토사가 누적되어 있는 등 환경이 불량하여 주변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청결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(강정순 위원)</p> <p>○ 관내 다수의 보안·가로등이 낮시간대에 점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고장신고 시 보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,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바라며, 소등으로 인한 사고우려지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격등제를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. (김상수 위원)</p>
2001.12.3(월) 14:42~15:45	도시개발과	<p>○ 흥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지역현안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수익성의 불투명으로 인한 민간투자자의 입찰저조등 많은 시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. (김상수, 이해수 위원)</p> <p>○ 다대여객선터미널 주변 관광편의시설 설치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다대항 이용 선박은 감소하는 실정인 바, 관련기관·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박 및 관광객유치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. (강정순 위원)</p> <p>○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대상사업장 면적이 구청장 허가사항인 10,000㎡에 근접하는 사업장의 경우, 준공검사시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람. (강정순 위원)</p>